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13호
- 나. 제출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 4.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 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7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제정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8개 자치구임.

구분	조례 제정(17개 자치구)	미제정(8개 자치구)
자치구명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 본 조례 제정안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천구 예비군 대원의 입·퇴소 편의 및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